애당초 '잘못 끼워진 단추'

규격화 시행 1년 그후

초점

수매대책없이 생약재배 기피

국산원가 상승, 밀수만 부추겨

많은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린 규격화 사업이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정착은 고사하고 당초 내세웠던 국민보건 향상과 유통일원화라는 시행 목적 근처에도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분분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 한약규격화정책이 애초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한약재 유통시장에서 규격품이 갖는 의미는 극히 회의적이다.

기존의 비규격품 보다 품질면에서 월등히 뛰어난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중 유통 규격품중 67%이상이 표시실량미달일 뿐 아니라 오히려 품질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만 내줬지 규격품 품질과 관련 제조업소에 대한 관계부처의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일부업소에서는 동일제품에 대해서 비 규격품으로는 6백g에, 규격품으로는 5백g 단위로 같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서 소비자를 혼란케 하기도 했다.

또 한의원이나 한약방 등에서는 규격품을 구입해도 규격포장을 일일이 다시 뜯어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이고 포장작업으로 비규격품 때보다 더 비싼값에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보통 한두제분 량의 양을 구입해 가는 것이 상례인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5백g 단위의 규격포장 약재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여서 잘 찾지 않는다고 한다.

더구나 비규격품 유통업자들이 품질을 확인하고 구매할 때 보다 포장된 규격품이 오히려 질이 떨어진다는 한의계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이러다 보니 한약재 시장에서 실제 규격품 유통량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제약업소는 제약업소대로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 놓고 공장가동을 하지 못해 부도로 폐업하는 사태가 속출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규격화 시행으로 인한 국내 생산농민들의 생약재배 기피는 생약농에 종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품질향상과 유통일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했던 규격화정책은 결국 의미없는 포장작업만을 한단계 더 추가함으로서 원가상승만을 부추긴채 생산자와 소비자 어느한 곳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미운 오리새끼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잘못 채워진 단추는 지금이라도 다시 제대로 채워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몫이다.

국내 한약재 유통의 오랜 관행과 생약농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속에서 '규격화'라는 단추가 제자리를 찾기를 기대해 본다. 그래서 미운 오리새끼가 사랑받는 백조로 다시 태어나기를.

〈문정희〉

생산자단체의 입장

수입산·법제 필요한 약재부터 단계적으로

'농가자가규격화 허용' 법적제도 마련 시급

제조업소를 통해서만 유통토록 할 경우, 전국 117개소 가공공장 유명무실 자명

현재 농가에서 생산된 한약재는 대부분 생산농가나 생산자단체가 간단한 시설을 갖추어 직접 세척, 건조, 절단, 포장 등 단순가공을 하여 자유롭게 출하 유통시킴으로서 직거래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주요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해 왔다.

■제조업소를 통해서만 규격품을 제조 유통토록 할 경우 정부가 의욕적으로 권장한 생약시설의 붕괴 우려

36개 규격화 품목중 특히 국산한약재 17종은 농민 또는 생산자단체가 단순히 세척, 건조, 절단, 포장 등 단순가공의 과정만을 거쳐 제품화하는 것으로 이를 제조업소를 통해서만 유통토록 할 경우 상대적으로 농가부가가치의 상실을 가져올뿐 물론 농가의 생약재배 위축을 초래 국내 생약생산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농림부에서 지금까지 막대한 자금을 지원, 현재 전국 117개소에 건립돼 있는 약용작물 시설이 유명무실해 질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한약재 규격품 제조과정, 양약과 달리 단순가공작업에 불과 농가 자가규격품도 제조업소것과 형태, 성상등 품질차이 없어

더구나 농가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한약재는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해 혼합 정제하는」 양약과는 달리 식물의 뿌리, 줄기, 잎, 열매등을 채취한 후 세척, 건조, 절단, 포장등의 단순가공을 하여 한약의 원료로 이용되는 바, 이들 단순가공 행위는 농산물 생산의 일부과정인 정선 작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농가가 가공한 한약재나 제조업자가 제조한 것이다고 사료됨. 형태, 성상 또는 품질등에 있어 하등의 차이점이 없다.

■현 제도하에서 농가 규격화 참여, 현실적 어려움

뿐만아니라 국내 생약재배 농민이나 단체는 몇개 품목만을 소량 재배하는 영세농이 대부분으로 규격화 농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비와 약사채용에 따른 운영비가 부담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수확기 3~4개월을 제외하고는 1년내내 가동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장의 가동을 8개월이상 중단함으로서 이에 따른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규격화 미정착된 상태에서의 무조건 확대실시는 부작용 초래 우려

이처럼 생약재배 농민조차 규격화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속에서 국내 생약농업에 대한 배려없이 규격화 확대 실시를 감행한다면 기존의 농가 몫이었던 부가가치를 제조업소 측에서 일방적으로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단계 유통으로 원가상승 요인

또한 제조업소를 통해서만 규격품을 유통토록 할 경우 그동안 생산농민→소비자로 거래되던 직거래 유통이 생산농민→제조업소→도매상→소비자로의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서 원가상승 요인이 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 규격화 제도 자체가 유통일원화라는 근본취지와는 달리 비효율적인 제도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규격화 시행에 대한 생약재배농민들의 제안

국산약재 규격화 당분간 보류 바람직

▲중금속이나 농약 잔류량에 문제가 많은 수입약재 부터 우선 단계적으로 규격화를 시행하고 국내생산기반이 조성될때까지는 국산 약재에 대한 규격화는 당분가 유보돼야 한다.

법제 필요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또 같은 품목이라도 국내 유통되고 있는 식품이나 농산물로는, 심지어 수출용 약재까지도 규격화 법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유독 국내 한약재 용도만을 규격화 시행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순으로, 국내산 약재의 경우 필요하다면 법제를 해야하는 품목(예 : 숙지황 등)만을 우선 규격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가 자가규격 허용

■시행하더라도, 국내생약농업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 농가 부가가치를 창출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규정 안에 농가 자가규격화 허용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한약관리규정 부칙

제3조(한약판매업자의 국산한약재 규격화취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조 및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약판매업자는 규격품대상한약 중 농민이 자체 생산하여 가공·포장한 제품으로서 제28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으로 정한 표준규격에 적합한 한약재의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제조업자"는 "판매원"으로, 제4호의 "제조번호"는 "포장연월일"로 각가 갈음하되 사용기한은 "포장일을 기준으로 표기"하고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생산자명"을 추가 기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약판매업자가 국내생산한약재를 규격화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품목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규격화일지를 작성하여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국내생산한약재 생산자(매도자)의 이름 및 주소, 매입일자, 매입량
2. 자가규격화일자(최종포장연월일), 포장단위, 포장량

부칙조항 신설되기 까지

94. 3. 25 보사부 고시 제1994-11호 규격품 대상 한약재 지정 고시(안)발표
94. 4. 19 경기도 포천군 생약재배회원 207명 규격화 반대 서명 날인 <복지부약무정책과 질의서 발송>
94. 4. 20 전북 도내 생산농가 대표자 회의 <규격화반대 및 서명운동 결의>
94. 4. 28 제2차 이사회, 규격화고시 반대 결의
94. 5. 11 회장단 회의 대책논의
94. 5. 12 보사부 약무정책과(본 협회의 입장 표명)
94. 5. 19 농림부 원예특작과(규격화 고시반대 진정)
94. 5. 25 강원도 정선군청 방문(군수면담)
94. 5. 27 충남 논산군 생약농민 진정서 복지부 발송
94. 6. 28 국회 농수산분과 위원장 면담(규격화 고시에 따른 문제점)
94. 8. 2 복지부 규격화 제도 추진 방안 협의회에 참석, 생산자단체의 입장 설명
94. 8. 4 기자간담회 개최(관리규정이 갖는 문제점 강조)
94. 8. 24 회장단 회의 규격화 대책 논의
94. 10. 3 회장단 회의
94. 10. 20 국회 보사분과위원 면담(생산농가 입장 전달)
94. 11. 9 한약관리규정 제정 고시를 위한 정책협의회(보건사회연구원), 본 회 이종용회장과 농민대표 강원도 인제 이종렬씨가 토론자로 참석,(국내 생약농업의 현실과 한약관리규정안의 문제점 지적)

<기 타>
△지부별 대책회의 수차례 : 자체 지부회의
△농림부 방문(회장단 4차례) : 과 규격화 협의 반대
△보건부 방문(부서장 2차례) : 대책생산자 입장 표명
△보건복지부 정책실장 면담(회장단)
△국회 관련의원 면담(회장단)

<규격화 반대 생산회원 서명 접수 및 보고 현황>
· 전북 1,867명 · 전남 2,000명 · 경북 761명
· 경남 380명 · 충북 250명 · 충남 160명
· 강원 1,103명 · 경기 300명 · 계 6,821명

95. 3. 25 복지부가 고시한 한약관리규정부칙 제3조에 「농가자가규격과 허용조항 삽입」이라는 성과물 획득